긴급입찰 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내서 능암, 신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 용 역 비: 금144,700,000원(금일억사천사백칠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개월까지
 ○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입찰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사　　유
- 위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6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며,
- 제35조 제4항 제2호(조기집행)에 따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고자 함.

2026. 6.

하수도사업소장　이 재 숙 (인)

하수도시설팀장　박 주 호 (인)

담　당　자　김 종 규 (인)